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장물(폐기물) 이전(제거) 및 지장물(폐기물)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납부고지 및 납부 고지서(통지서)를 납부 의무자(임태병)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현재 주민등록표의 아래 주소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.

2007년 02월 20일

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인



아 래

1. 성 명 : 임 태 병
2. 주민등록번호 : 610325-1\*\*\*\*\*
3. 주 소 : 대전 중구 사정동 376
4. 서류의 명칭 :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고지 및 고지서(통지서) 발부
5. 서류의 주요내용

가. 2007년 01월 비용납부를 명령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(대전 중구 사정동 506-1번지·398-1번지) 내 지장물(폐기물) 이전(제거) 및 지장물(폐기물)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(87,755,120원)을 2007년 03월 20일까지 구 금고(하나은행 대전 대흥동 지점)에 납부토록 납부고지 및 고지서(통지서) 발부

나. 만약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가산금(3%)이 가산되고 증가산금(매 1개월 마다 1.2%, 최장 60개월 까지)이 추가되며,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을 압류하게 됨. 끝.